

##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재정비촉진계획(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)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-7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#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## 가. 행위제한 내용

1) 제한지역 :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-7 일원(면적 : 7,298.5㎡)

#### 2) 제한대상

##### 가)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) 토지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
#### 3) 적용제외

가)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·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
- 「건축법」 제16조에 의한 기 건축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 범위 이내로의 변경(단, 타 용도에서 다세대로의 변경은 제외)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포함

나)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
다)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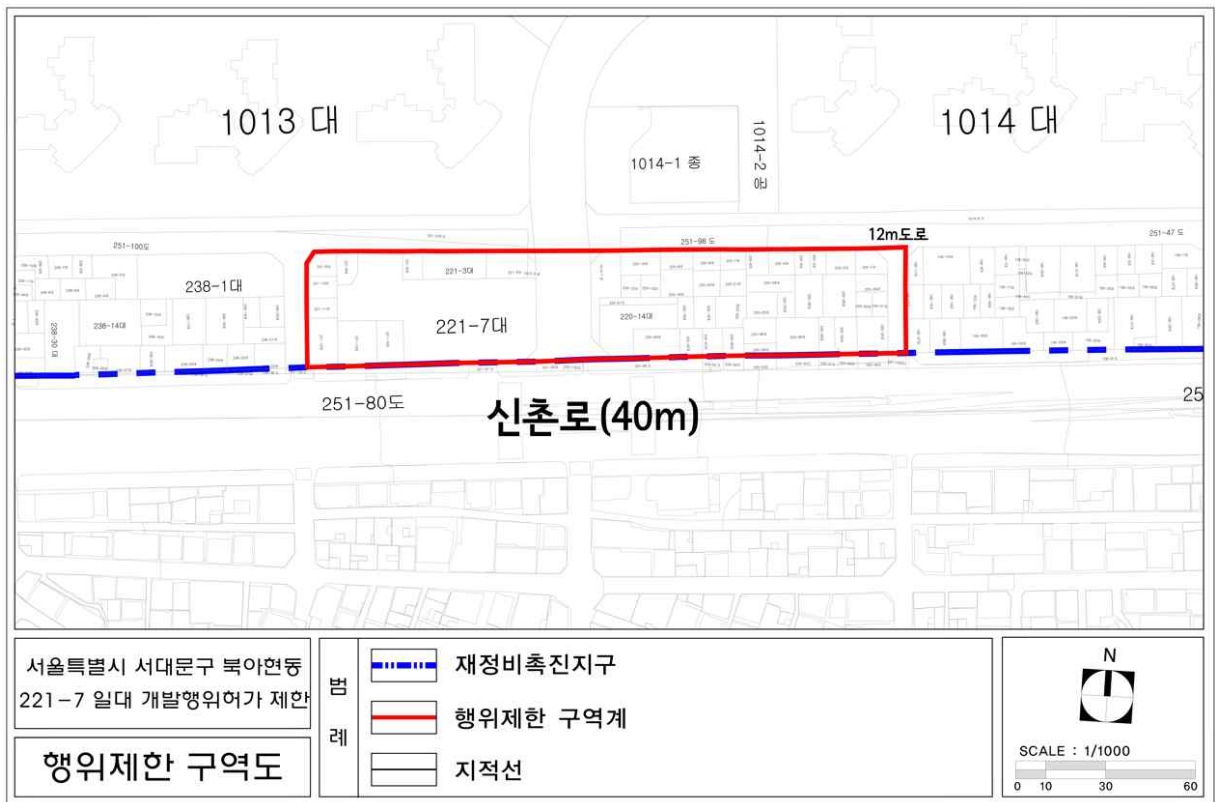
4) 제한기간 :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)

5) 제한사유 :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 
 그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  
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 
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

가) 재정비촉진계획(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)을 수립 중인 지역의  
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
나)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 
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

나. 관계도면

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,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다. 관계도서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거정비과(02-330-1640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